

# 「그랑시티자이2차」 일반분양 중도금대출 안내



- ▶ 접수기간 : 2018. 1. 12. ~ 14 (3일간)
- ▶ 접수장소 : 그랑시티자이2차 분양사무소
- ※ 접수기간 동안 대출서류 미접수시 중도금 실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 방문접수 바랍니다.

대출대상	• 아파트 공급금액의 1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이 대출 심사 후 대출적격자로 인정한 분양계약자								
대출한도	• 분양금액의 60% 범위 내								
대출금리	• 변동금리 [기준일 : 2017.12.22. 현재] 신규취급액기준COFIX(6개월)+가산금리 2.35% (기준일 현재 연 4.12%) ※ 대출이자 : 입주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시행사 부담 • 위 적용금리는 기준일 현재 조건이며, 대출 상담일 또는 취급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								
보증료	• 대출(보증)금액 × 연 0.13%(대출실행일 ~ 대출(보증)만기일) * 고객 부담								
대출만기	• 2021년 3월 31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까지 * 대출만기 연장 불가								
대출시기	• 분양계약서상 납부일								
중도상환해약금	• 면제 (단, 준공 전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시 0.9% 부과)								
인지세	• 고객과 기업은행이 각각 50%씩 부담(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33%;">5천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width:33%;">5천만원 초과~1억원</td> <td style="width:33%;">1억원 초과</td> </tr> <tr> <td>면제</td> <td>7만원</td> <td>15만원</td> </tr> </table>			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~1억원	1억원 초과	면제	7만원	15만원
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~1억원	1억원 초과							
면제	7만원	15만원							
준비서류 • 대출서류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(중도금대출/보증신청용) • 공동명의시 신분증 각각 제출	가. 본인 확인서류 • 신분증 나. 소득 및 직장서류 • 직장인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회사지인 날인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• 자영업자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연금소득자 :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• 기타소득(종합소득)자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다. 공통서류 : 분양계약서 원본, 계약금 납부 영수증 원본,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라. 자의여부확인서(건설노조 확인 후 발급 : 02-790-0777) • 분양계약자가 시행(공)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피부양자인 경우								

\* 대출 신청 또는 취소, 금액 변경시에는 해당 중도금 납부 1개월 전 아래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변경·신청하여 주십시오.

\* 타 세부내용(대출부적격 여부)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※ 상기 내용은 은행 및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'17.1.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.

- ① 소득증빙자료 제출
- ② 비거처식 분할상환(거치기간 1년 이내) 적용
- ③ 변동금리 선택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DTI\* 평가 (\*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DTI)
- ④ DSR\*\* 산출 및 활용 관련 사항 (\*\*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)

한편, 잔금대출 신청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환능력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-4979호 (2017.12.28.) 계시기한(2018.6.22)

※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,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 부과 됩니다.

※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(☎1566-2566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금융감독원 : 국번없이 ☎1332, IBK기업은행 : ☎080-800-0119)

※ IBK기업은행은 금융·향응을 받지 않습니다. 윤리경영 위한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(☎02-729-7490, e-mail : ibkethics@ibk.co.kr)

신교잔지점 031-475-3133(내550) [204동 203~4303호 / 205동 203~4903호 / 206동 201~2901호, 206~2906호]  
 고잔중앙지점 031-402-8587(내560) [206동 3001~4901호, 3006~4906호 / 207동 202~4802호, 208동 204~4804호]  
 경기테크노파크지점 031-500-4200(내104) [210동 302~4902호 / 211동 201~1904호]  
 안산중앙지점 031-414-6101(내501) [211동 2001~4904호]